

## [부록1]

###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

제 정 : 2018. 4. 20.  
개 정 : 2022. 7. 1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)**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장 소속 하에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#### 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, 총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교원 3인,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, 교원 위원의 경우 교무부장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.
- ③ 교원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유치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학부모 위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임명한다.
-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, 평가관리자(교무부장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⑧ 제1항과 2항의 위원 수 또는 학부모 위원의 비율은 당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#### 제4조(기능)

- ① 위원회는 당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안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가.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유치원 시행 계획
  - 나.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, 평가 내용, 방법, 절차, 시기
  - 다.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/조사 문항 및 평가 양식의 실정에 관한 사항
  - 라. 평가종류별, 평가대상자별, 평가영역별, 평가자의 할당에 관한 사항
  - 마.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바.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열람에

관한 사항

- 사. 단위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진단 및 평가 결과 분석
  - 아.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- 가.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
  - 나.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 개선과 관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
  - 다.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

**제5조(서약서 작성)**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(회의)

-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회의는 유치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규정의 개정)** 동 규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